

<p>제2021-120호 2021년 6월 23일(수)</p>	<p>시  보 여수시</p>	<p>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8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1-274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승인 고시 3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1-1784호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4

기 타

- 여수시 조례 제1606호 여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합니다.

승인번호 (승인일)	점용·사용 장소	점용·사용 면적(㎡)	점용·사용 목적	점용·사용 기간	피 승인 자		비 고
					주 소	성 명	
2021-44 (21. 6. 23.)	남면 유송리 139-10번지 일원	451.19	남면 소유항 접안시설 설치공사	2021. 6. 23. ~ 2051. 6. 22.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장	섬자원 개발과
2021-45 (21. 6. 23.)	남면 우학리 982번지 일원	495.22	남면 학동마을 물양장 확장공사	2021. 6. 23. ~ 2051. 6. 22.			
2021-46 (21. 6. 23.)	남면 안도리 794-4번지 일원	120	남면 안도마을 해안도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2021. 6. 23. ~ 2051. 6. 22.			

2021. 6. 23.

여 수 시 장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신고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여 수 시 장

1. 폐업대상 업체

상 호	영업 소재지	폐업대상 건설 업종 (등록번호)	법인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한동건설엔지니어링(주) (채*의)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1038,상가동205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여수2020-29-09)	205211-00087**	2021.6.23.	사업포기

2. 공고 기간: 2021. 6. 23.~ 7. 7.(15일)

3. 공고 장소: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보

4. 기타

본 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11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6 월 23 일

여 수 시 장

권오봉



여수시 조례 제1606호

붙임 여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5명으로 구성”를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3인의 위원은 법관”을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로 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말한다”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3인”을 “5명”으로 하고, 제2조제2항제2호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여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5명으로</u>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u>3인의</u>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p> <p>2. <u>2인의</u> 위원은 여수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1명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p> <p>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u>3인</u>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p> <p>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u>2인</u>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2조(구성) ① ----- ----- ----- ----- <u>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u> ----- ----- -----.</p> <p>1. <u>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u>(「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p> <p>2. <u>2명</u>----- ----- -----.</p> <p>② ----- ----- -----.</p> <p>1. ----- <u>5명</u>----- -----.</p> <p>2. ----- <u>2명</u>----- -----.</p> <p>③ (현행과 같음)</p>